

2022. 9. 16. ~ 9. 28.

- 13일간 -

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
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처리결과

의안 번호	의안명	의결 일자	심사 결과
2290	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9.28.	원안가결
2291	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9.28.	원안가결
2292	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	9.16.	원안가결
2293	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9.28.	원안가결
2294	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9.28.	원안가결
2295	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	9.28.	원안가결
2296	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9.28.	원안가결
2297	장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	9.28.	원안가결
2298	장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	9.28.	원안가결
2299	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9.28.	원안가결
2300	장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	9.28.	원안가결
2301	2021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의 건	9.28.	원안가결
2302	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	9.28.	원안가결
2303	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	9.28.	원안가결
2304	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	9.16.	원안가결

주요내용

1.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제출자 : 오원석 의원(의회사무과)

○ 제출일자 : 2022. 9. 6.

○ 제안이유

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함.

○ 주요내용

「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영리행위의 제한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6조)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2.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제출자 : 차상현 의원(의회사무과)

○ 제출일자 : 2022. 9. 6.

○ 제안이유

-장성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개편된 직제 반영(안 제3조제2항제2호)
 - 명칭변경 : 행정복지국 → 자치행정국, 환경위생과 → 환경과, 재무과 → 세무회계과, 문화시설사업소 → 체육사업소
 - 신설 : 가족행복과
 - 삭제 : 소통정보실
-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개편된 직제 반영(안 제3조제2항제3호)
 - 명칭변경 : 경제건설국 → 건설산업국
 - 과 분리 : 안전건설과 → 재난안전과, 건설과 경제교통과 → 교통에너지과, 일자리경제실
 - 과 이전 : 농업축산과, 농업유통과
 - 삭제 : 미래성장개발과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3.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- 제출자 : 오원석, 차상현 의원 발의
- 제출일자 : 2022. 9. 8.
-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2022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

○ 주요내용

- 출석요구일시 : 2022. 9. 20.(10:00) ~ 2022. 9. 22.(24:00)

- 출 석 범 위 : 군수 및 『장성군 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
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』 제2조에서
규정한 관계공무원

- 출 석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4.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제 출 자 : 고재진 의장(주민복지과)

○ 제출일자 : 2022. 8. 31.

○ 제안이유

장성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
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참전유공자 보훈
수당이 타 시·군에 비해 낮아 보훈에 대한 예우 및 사기양양을
위해 인상안을 마련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지원범위 인상(안 제4조)

· 참전명예수당 : 매월 70,000원 지급 → 매월 140,000원 지급

· 유족수당(배우자에 한함) : 매월 50,000원 지급 → 매월 100,000원 지급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5.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제 출 자 : 심민섭 부의장(주민복지과)

○ 제출일자 : 2022. 8. 31.

○ 제안이유

「국가보훈기본법」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군이 지원하고 있는 보훈수당이 타 시·군에 비해 낮아 보훈에 대한 예우 및 사기양양을 위해 인상안을 마련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지원범위 인상(안 제9조)

· 제9조(보훈명예수당의 지급) 1항 중 : 매월 50,000원 지급 → 매월 100,000원 지급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6.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기획실장)

○ 제출일자 : 2022. 9. 8.

○ 제안이유

군정의 주요 정책결정을 위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화합과 소통의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「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」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조례제정 목적(제1조)
- 정책자문위원회 기능, 구성, 임기, 역할(제2조~제5조)
- 회의 및 간사, 서기(제6조~제7조)
- 자료제출 및 협조, 자문결과 활용(제9조~제10조)
- 자문위원 수당 등(제10조)
- 자문위원의 비밀유지(제11조)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7.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제출자 : 장성군수(총무과장)

○ 제출일자 : 2022. 9. 8.

○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 「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표준
조례 개정(안)」(자치분권제도과-1222호, 시행 2020. 4. 22.)에
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주민자치회 규모 및 위원 자격 확대(안 제6조, 제7조)

(현행) 위원 정수 25명 이내

위원 연령 요건을 ‘만 19세 이상’ 으로 규정

‘외국인 주민’ 및 ‘각급 학교 임·직원’ 에 대한 참여 미규정

(개정)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변경

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위원 연령 요건을 ‘만 18세 이상’ 으로 하향

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
‘영주권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’에게 참여 개방
‘각급 학교 임·직원’ 참여 규정

- 위원 선정 시 공개모집 및 추천 비율 조정(안 제9조)

(현행) 공개모집 60퍼센트 이내, 추천 40퍼센트 이내

(개정) 공개모집 70퍼센트 이내, 추천 30퍼센트 이내

- 위원 연임 횟수 제한 삭제 및 임기 명확화(안 제19조)

(현행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(개정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8. 장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제 출 자 : 최미화 의원(안전건설과)

○ 제출일자 : 2022. 8. 31.

○ 제안이유

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장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·진압 및 구조업무와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하여 장성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지원범위 등(안 제5조)

-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
-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 관리비를 지원
- 지원절차 등(안 제6조 제2항)
- 「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·통보
- 지도 및 감독(안 제7조)
-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「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
- 군수는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업에 관한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함
- 지원중단(안 제8조)
- 「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함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9. 장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경제교통과장)

○ 제출일자 : 2022. 9. 8.

○ 제안이유

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착한가격업소의 자발적 가격 억제 노력으로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안 제7조)
- 영업자 협조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10.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경제교통과장)

○ 제출일자 : 2022. 9. 8.

○ 제안이유

-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상위법 규정 및 취지*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* 「소상공인기본법」상 사업장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.
- 코로나-19 등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소상공인 지원대상 변경을 위한 조문 개정(안 제3조, 제4조)
 - “사업장과 주소 및 거소를” 에서 “사업장을” 로 개정
 - “관내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” 를 “예비창업자” 로 개정
-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(안 제7조의2)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11. 장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경제교통과장)

○ 제출일자 : 2022. 9. 8.

○ 제안이유

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지역상생구역의 기준(안 제3조)
-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12. 2021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의 건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

○ 제출일자 : 2022. 9. 8.

○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운용 결과를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1) 세입·세출결산

○ 세입·세출 결산 내역

(단위 : 원)

회 계 별	예산현액	세입결산액	세출결산액	세계잉여금
계	639,614,805,520	651,297,539,619	494,643,962,606	156,653,577,013
일반회계	627,700,129,050	637,736,694,735	485,689,548,316	152,047,146,419
특별회계	11,914,676,470	13,560,844,884	8,954,414,290	4,606,430,594

○ 세계잉여금 내역

(단위 : 원)

회 계 별	계	명시이월	사고이월	계속비이월	보조금잔액	순세계잉여금
계	156,653,577,013	56,406,234,660	34,594,947,030	26,080,720,750	6,382,289,730	33,189,384,843
일반회계	152,047,146,419	56,324,234,660	34,502,835,700	26,080,720,750	6,300,805,260	28,838,550,049
특별회계	4,606,430,594	82,000,000	92,111,330		81,484,470	4,350,834,794

2) 기금 결산

○ 2021년말 기금 현재액은 22,439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

-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: 13,086백만원
- 사회 복지 기금 : 3,405백만원
- 체육 진흥 기금 : 2,230백만원
- 재난 관리 기금 : 2,109백만원
-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: 1,527백만원
- 식품 진흥 기금 : 82백만원

3) 채권 결산

○ 2021년말 채권 현재액은 7,81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

- 일 반 회 계 : 7,479백만원
- 특 별 회 계 : 339백만원

4) 채무 결산

- 2021년말 채무 현재액은 0원임

5) 공유재산 결산

- 2021년말 공유(군유)재산 현재액은 896,06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

- 토 지 : 25,764천㎡ 303,909백만원
- 건 물 : 189천㎡ 223,762백만원
- 입 목 죽 : 4,859백만원
- 공 작 물 : 352,751백만원
- 기 계 기 구 : 5,415백만원
- 무 체 재 산 권 : 4,662백만원
- 용 의 물 건 : 703백만원

6) 물품 결산

- 2021년말 물품보유 총수는 753개, 6,68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

- 전 년 도 말 : 771개 6,391백만원
- 신 규 취 득 등 : 55개 620백만원
- 매 각 : 73개 323백만원

7) 재무회계 결산

- 재정상태보고서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자 산(A)	부 채(B)	순자산(A-B)	비 고
2021년도	2,642,327	12,523	2,629,804	

○ 재정운영보고서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수 익(A)	비 용(B)	운영차액(A-B)	비 고
2021년도	490,870	386,222	104,648	

○ 순자산변동보고서 (단위 : 백만원)

기초순자산	운영차액	순자산증가	순자산감소	기말순자산
2,524,375	104,648	820	39	2,629,804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13.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

- 제 출 자 : 장성군수
- 제출일자 : 2022. 9. 8.
-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(일반회계) : 1,337,333,000원
- 예비비지출 결정액(일반회계) : 466,750,000원
- 예비비 지출액 : 408,366,070원
- 이 월 액 : 12,000,000원
- 집 행 잔 액 : 46,383,930원
- 주요 지출결정내역
 -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등 : 228,650,000원
 -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: 151,200,000원
 - 희망근로지원,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: 43,900,000원
 - 과수 병해충 방제비 지원 : 43,000,000원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14.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

- 제 출 자 : 장성군수
- 제출일자 : 2022. 9. 8.
-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운용 결과를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자 함.

- 주요내용

(단위: 원)

기 금 명 (운용부서)	전년도말 조 성 액 (가)	당해연도 증감액			당해연도말 조 성 액 (마)=(가)+(나)
		계 (나)=(다)-(라)	수입액 (다)	지출액 (라)	
합 계	17,483,074,791	9,514,330,137	14,267,265,580	9,310,988,980	22,439,351,391
통합재정안정화기금 (기 획 실)	8,800,000,000	4,285,659,250	13,097,593,250	8,811,934,000	13,085,659,250
사회복지기금 (주 민 복 지 과)	3,427,836,674	△22,913,000	62,836,000	85,749,000	3,404,923,674
체육진흥기금 (문 화 관 광 과)	1,924,184,345	305,985,420	316,605,340	10,619,920	2,230,169,765
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(환 경 위 생 과)	1,322,507,770	204,555,520	334,555,520	130,000,000	1,527,063,290
식품진흥기금 (환 경 위 생 과)	71,221,824	11,481,770	16,281,770	4,800,000	82,703,594
재난관리기금 (안 전 건 설 과)	1,937,324,178	171,507,640	439,393,700	267,886,060	2,108,831,818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15.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

- 제 출 자 : 서춘경 의원(의회사무과)
- 제출일자 : 2022. 9. 16.

○ 제안이유

- 국내외적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있는데 국내 쌀값은 계속 떨어져 45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으며,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
- 쌀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제도화했으나 시장격리 시행 시기 일실로 쌀값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
- 이에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농촌현실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하고자 함

○ 주요내용

-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촌과 농민의 참혹한 현실을 지적하면서,
- 정부에 쌀값 폭락 방지대책 및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